

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도병술 축산과장)

가. 제정이유

-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포항을 구축하기 위해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원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기능 및 운영시간(안 제4조~제5조)
- 반려동물 테마공원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-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
다. 관계법령

- 「동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조례안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포항을 구축하기 위해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원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특성상 반려동물 간 또는 이용자와 반려동물 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, 시설 운영 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- 제11조 위탁운영의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수정사항

-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- 안 제11조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1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